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5,058천원

○ 징수결정액 : 8,869천원

○ 실제수납액 : 1,724천원

○ 미 수 납 액 : 7,145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9.4%(전연도 100%)임.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5,058	8,869	1,724	7,145	19.4%
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임시적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기타수입	4,388	1,724	1,724	-	100.0%
그외수입	4,388	1,724	1,724	-	100.0%
지난연도수입	-	7,144	-	7,145	-
지난연도수입	-	7,144	-	7,145	-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1,648,122천원
○ 예산현액 : 1,648,122천원
○ 지 출 액 : 1,414,431천원
○ 불 용 액 : 233,690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4.2%(전연도 16.4%)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예산집행잔액 2억3천3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 산	1,648,122	1,414,431	-	233,690	14.2
사 업 예 산 계	1,146,493	962,108	-	184,384	16.1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81,040	271,955	-	109,084	28.6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381,040	271,955	-	109,084	28.6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000	15,919	-	2,080	11.6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34,803	227,999	-	106,083	31.9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237	28,037	-	200	0.7
시정 청렴도 향상	153,906	133,780	-	20,125	13.1
시정 청렴도 향상	153,906	133,780		20,125	13.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90,580	76,087	-	14,763	16.2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5,200	42,173	-	3,026	6.7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17,856	15,520	-	2,336	13.1
안전도시 서울 구현	131,510	121,331	-	10,178	7.7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 제거	131,510	121,331	-	10,178	7.7
명예시민호민관 운영	39,940	39,922	-	17	0.1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91,570	81,409	-	10,160	11.1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480,037	435,040		44,996	9.4%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327,580	314,591	-	12,988	4.0
부조리신고 보상	5,000	5,000	-	-	-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70,640	67,814	-	2,825	4.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51,940	241,776	-	10,163	4.0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86,310	62,013	-	24,296	28.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6,310	62,013	-	24,296	28.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66,147	58,436	-	7,710	11.7
기강감찰 운영	66,147	58,436	-	7,710	11.7
일 반 예 산 계	501,629	452,323	-	49,305	9.8
기본경비	501,629	452,323	-	49,305	9.8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18년도말 감사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4백만원

○ 당해연도말 1억 2천 6백만원으로

○ 총 수량 70개, 현재액은 1억 2천 6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69	1	-	1	-	-	-	70
	금액	121,226	4,818	-	4,818	-	-	-	126,044
일반회계	수량	69	1	-	1	-	-	-	70
	금액	121,226	4,818	-	4,818	-	-	-	126,044

Ⅱ. 검토 의견

1.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전년(2017회계연도, 977만원) 대비 9.2%가 감소된 887만원이며,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506만원) 대비 75.3% 증액된 8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72만원을 수납하여 19.4%의 징수율(미수납액 714만원)을 보이고 있음.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5,058	8,869	1,724	7,145	19.4%
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임시적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기타수입	4,388	1,724	1,724	-	100.0%
그외수입	4,388	1,724	1,724	-	100.0%
지난연도수입	-	7,145	-	7,145	-
지난연도수입	-	7,145	-	7,145	-

○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액(5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34.1%(172만원)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7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887만원) 대비 미수납률이 80.6%에 달하고 있음.

○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43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72만 4천원만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714만원을 전액 징수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임.

감사위원회는 과년도 평균 세입액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소징수 항목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예산추계 방법 및 산출기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임시적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기타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그외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감사담당관	4,388	1,563	35.6%	1,563	-	0.0%
안전감사담당관	-	161	순증	161	-	0.0%
조사담당관	670	-	0.0%	-	-	-
지난연도수입	-	-	-	7,145	7,145	100%

〈 2018회계연도 '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원)

소관부서	세목명	부과세부내역	과세금액	비고
합계			1,724,290	
감사담당관	그외수입	2017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380,840	수납
		연가보상비 반납	368,070	〃
		부양가족 변동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20,000	〃
		2017년 전문관 수당 오지급분 환수	788,710	〃
안전감사담당관	그외수입	고용산재보험 오납보험료 반환	5,390	〃
		12월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	134,300	〃
		2017년 민사소송 재산조회 신청수수료 등 소송비용 예치금 일부환급	26,980	〃

○ ‘그외수입’ 징수항목 중 반납(연가보상비 반납, 가족수당 반납,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과 반환(고용산재 보험 오납보험료 반환) 및 환수(전문관 수당 오지급분 환수)는 감사위원회가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반납액으로, 타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의 결산은 그동안 징수관인 재무국(세무과)에서 담당해 왔으나, ① 부서별 세입결산의 연속성 부재, ②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저조, ③ 지난연도수입의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 불가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회계연도부터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분임징수관)에서 결산하도록 변경하였음[1].

○ 감사위원회의 ‘지난연도 수입’은 안전감사담당관 1건(157만원), 조사담당관 2건(451만원, 106만원)으로 총 3건에 714만원임.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임시적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기타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그외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지난연도수입	-	-	-	7,145	7,145	100%
감사담당관	-	-	-	-	-	-
안전감사담당관	-	-	-	1,573	1,573	100%
조사담당관	-	-	-	5,571	5,571	100%

1)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2016.8.) 재무국(세무과)

○ 특히 조사담당관의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소송비용을 부과하여 현재 체납 중인 2건으로, 1건(4,511천원)은 압류조치로 채권 확보하였고, 나머지 1건(1,059천원)은 2005년에 소송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채권 소멸시효(10년, 2015년 소멸)가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과하고, 2018회계연도도 아닌 2019회계연도에 결손처분(2019.4.) 처리하였음.

○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에서는 과년도 세입이 없다는 이유로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연도 수입 714만원을 징수결정하고도 전액 미징수하여 다음연도(2019년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는 등 지난연도 수입이 방치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다양한 체납세액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감사위원회의 예산현액은 총 16억4천8백만원으로, 이중 14억1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4.2%(2억3천4백만원)수준이며, 서울시 전체 불용율(2.1%)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 총괄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총 예 산	1,648,122	1,414,431	233,690	14.2%
사업예산 계	1,146,493	962,108	184,384	16.1%
일반예산 계	501,629	452,323	49,305	9.8%

○ 특히, 다음 6개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매년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해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의 불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5,000	2,925	2,075	**41.5%**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40,729	138,062	102,667	**42.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38,150	30,395	7,755	**2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81,310	57,018	24,292	**29.9%**
기강감찰 운영	공공운영비	11,376	7,992	3,384	**29.7%**

가. 과도한 예산의 불용

1)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은 공직기강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5백만원)’를 41.5%(207만원) 불용 처리하였음.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000	15,920	2,080	11.6%
사무관리비	**5,000**	**2,925**	**2,075**	**4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995	6	0.1%
포상금	6,000	6,000	-	0.0%

○ 감사위원회는 불용사유를 계획에 없던 감사(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추가로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축소하여 실시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와 같은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에도 감사계획 외 감사로 워크숍 예산을 전액불용하였음.

※ **사무관리비(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불용사유** :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 워크숍, 2018. 10. 22.」계획 수립 후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없던「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추가 실시로, 전수조사 기간 내인 2018. 11. 20. 시행된 워크숍 행사를 계획 대비 축소하여 추진.

※ **2017 사무관리비(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불용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점검 등 계획에 없던 감사추가로 연말 계획했던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함.

○ 워크숍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의 하위 사업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를 초과달성(달성률 102%)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18회계년도 “공무원 청렴도 향상”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공무원청렴도(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확인	목표	7	7.28
		실적	7.21	7.39
		달성률(%)	103%	102%

○ 그러나, 서울시 청렴도는 총 5개 등급[2] 중 4등급으로 여전히 하위 수준이며, 워크숍은 미실행과 축소시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낮은 목표 설정,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평가지표 등으로 사업의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별 객관적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각 사업의 성과평가 후 개선 및 강화 또는 축소 및 폐지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은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 및 토론, 공무원 행동강령 강의 등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의 성과가 낮거나, 반복적 불용 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청렴도 평가를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하였음.

〈 2018 서울특별시 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4등급(▲1)	4등급(-)	4등급(-)	3등급(▲1)
평 가 자(배점비율)	민원인(60%)	소속직원(25%)	전문가, 시민, 기자 등(15%)

〈 2017년 이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순위 및 점수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1	충남 (8.07)	경남 (7.83)	대전 (7.60)	충남 (8.39)	경남 (8.13)	대전 (7.73)	경남 (8.26)	경남 (8.63)	부산 (8.87)	경남 (7.18)	경남 (7.12)	**서울 (6.66)**
2	경남 (8.05)	충남 (7.63)	경남 (7.59)	인천 (8.26)	충남 (8.06)	경기 (7.72)	부산 (8.17)	부산 (8.47)	경남 (8.84)	경기 (7.05)	충남 (6.84)	경기 (6.56)
3	울산 (7.91)	대전 (7.41)	부산 (7.59)	세종 (8.25)	경기 (7.63)	부산 (7.60)	강원 (8.13)	충북 (8.34)	제주 (8.60)	충남 (6.88)	경기 (6.8)	경남 (6.53)
4	제주 (7.84)	부산 (7.41)	충북 (7.44)	울산 (8.21)	부산 (7.58)	충북 (7.56)	제주 (8.12)	제주 (8.33)	전북 (8.45)	울산 (6.74)	강원 (6.49)	울산 (6.5)
5	인천 (7.77)	경기 (7.36)	경기 (7.41)	경남 (8.17)	대전 (7.57)	경남 (7.54)	울산 (8.03)	대전 (8.24)	충북 (8.42)	전남 (6.74)	경북 (6.43)	부산 (6.48)
6	경기 (7.77)	울산 (7.33)	전북 (7.37)	제주 (8.12)	전북 (7.53)	세종 (7.47)	충남 (7.99)	울산 (8.04)	울산 (8.16)	강원 (6.65)	충북 (6.42)	전북 (6.48)
7	강원 (7.76)	전북 (7.23)	충남 (7.36)	경기 (8.10)	세종 (7.5)	인천 (7.46)	충북 (7.95)	경기 (8.01)	대전 (8.15)	부산 (6.59)	전남 (6.41)	대전 (6.46)
8	전북 (7.71)	충북 (7.23)	울산 (7.28)	부산 (8.07)	광주 (7.41)	충남 (7.44)	대전 (7.83)	충남 (7.97)	강원 (8.12)	세종 (6.59)	대전 (6.4)	전남 (6.41)
9	부산 (7.69)	광주 (7.19)	세종 (7.26)	광주 (8.03)	울산 (7.39)	대구 (7.41)	전북 (7.76)	대구 (7.93)	경기 (8.05)	충북 (6.58)	**서울 (6.4)**	충남 (6.38)
10	세종 (7.68)	세종 (7.08)	대구 (7.20)	전북 (8.01)	경북 (7.31)	광주 (7.40)	대구 (7.76)	전북 (7.9)	충남 (8.03)	광주 (6.46)	부산 (6.39)	강원 (6.34)
11	광주 (7.63)	대구 (7.05)	광주 (7.16)	강원 (7.91)	인천 (7.23)	제주 (7.33)	전남 (7.57)	인천 (7.89)	**서울 (7.97)**	전북 (6.45)	대구 (6.38)	경북 (6.32)
12	대전 (7.57)	제주 (7.03)	인천 (7.15)	대전 (7.83)	충북 (7.15)	**서울 (7.29)**	인천 (7.56)	**서울 (7.87)**	인천 (7.95)	인천 (6.44)	울산 (6.32)	세종 (6.28)
13	전남 (7.50)	강원 (6.99)	**서울 (7.06)**	전남 (7.82)	**서울 (7.09)**	울산 (7.28)	광주 (7.56)	강원 (7.63)	광주 (7.94)	경북 (6.42)	전북 (6.32)	광주 (6.27)
14	충북 (7.43)	인천 (6.94)	제주 (7.05)	**서울 (7.65)**	강원 (7.07)	전북 (7.25)	경기 (7.51)	전남 (7.6)	대구 (7.68)	대전 (6.33)	광주 (6.22)	대구 (6.27)
15	대구 (7.37)	**서울 (6.92)**	강원 (7.04)	대구 (7.57)	대구 (7.06)	전남 (7.06)	**서울 (7.31)**	광주 (7.53)	세종 (7.57)	**서울 (6.31)**	세종 (6.19)	충북 (6.23)
16	**서울 (7.21)**	경북 (6.71)	전남 (6.89)	충북 (7.52)	제주 (7.04)	강원 (6.96)	경북 (7.29)	세종 (7.47)	전남 (7.57)	대구 (6.29)	인천 (6.18)	인천 (5.74)
17	경북 (7.15)	전남 (6.65)	경북 (6.36)	경북 (7.35)	전남 (6.97)	경북 (6.68)	세종 (6.97)	경북 (6.15)	경북 (7.47)	제주 (6.22)	제주 (6.05)	제주 (5.56)

2)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 투명성 제고” 사업은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2억4천만원)’의 42.6%(1억2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34,803	227,999	106,804	31.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74	19,864	110	0.5%
사무관리비	**240,729**	**138,062**	**102,667**	**4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27,710	790	2.8%
특정업무경비	45,600	42,363	3,237	7.1%

○ 불용 처리한 ‘사무관리비’는 공익감사단(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의 수당,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워크숍을 위한 예산으로, 계획에 없던 감사(중앙정부 요청사항 수행, 비리채용 특별점검 등) 수행으로 자체감사를 축소한 것을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2018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 중앙정부 요청사항 수행으로 연초 계획 대비 자체감사 물량 감소 등

※ **2017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시비보조사업 모티터링에 주로 사용 계획된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2억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 점검 등 계획에 없던 감사추가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모니터링 축소로 집행부진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중 ‘사무관리비’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내역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불용률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8,000	29,760	18,240	38.0%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6명*25회	22,500	13,950	8,550	38.0%
- 위원회 안건 검토 수당 150,000원*6명*25회	22,500	13,950	8,550	38.0%
- 교통비 20,000원*6명*25회	3,000	1,860	1,140	38.0%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참여 수당	**182,729**	**108,302**	**74,427**	**40.7%**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10,000	-	10,000	100%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불용** : 당초 연간 25회 개최를 예정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명절, 하계휴가, 하반기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현안업무 발생 등에 따라 축소개최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불용 사유** : 당초 2018하반기 워크숍을 추진 계획 했으나,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 현안업무 발생으로 미실시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등) 감사참여 수당(1억8천만원)’은 ‘사무관리비(2억4천만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사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 감사 및 점검 축소에 따른 미실행으로 예산의 40.7%(7천4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운영 계획(2016.11)’에 따라 공익감사단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년 연속(2017년, 2018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은 감사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목표인 ‘소통협치 감사기능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속해 있으며, 평가의 기준은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한 시민 전문가 수’로 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111%)한 것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시민전문가” 관련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한 시민전문가 수(명)	시민전문가 참여건수	목표	51	140
		실적	119	155
		달성률(%)	233%	111%
자체 감사실시건수 및 공직기강 확립 건수(건)	감사실적 확인	목표	11	30
		실적	20	35
		달성률(%)	182%	117%

○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감사계획 및 사업을 취소하여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추진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는 각종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독임제 감사관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조직체계를 변경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 산하에서 시장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부의 요청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한 감사계획 및 사업까지 취소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정부의 감사 관련 요청사항이 있을 시 정부로부터 감사인력 파견 및 감사시기 조정 등으로 감사계획에 따른 자체감사의 시행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감사위원회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감사요청과 자체감사 간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 지속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우선하고 자체감사를 지연·취소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의 감사기구가 아닌 사실상 감사원 또는 정부에 예속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여 당초 수립한 성과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시민전문가 참여를 통해 감사인력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정확히 계획하고, 적정한 인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단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2018년 공익감사단 활동 실적 〉

(단위:천원)

	소계			감사참여			자문참여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소계	68	278	169,761	44	218	152,514	24	60	17,247
2016년	11	27	13,370	5	9	7,600	6	18	5,770
2017년	30	143	85,289	17	111	75,762	13	32	9,527
2018년	27	108	71,102	22	98	69,152	5	10	1,950

3)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청렴시책 전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포상금’의 91.4%(1천1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90,850	76,087	14,763	16.2%
사무관리비	48,750	48,482	268	0.5%
국외업무여비	20,000	17,360	2,640	13.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9,160	340	3.6%
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 ‘포상금’은 하정청백리상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본 포상금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단순한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포상금’의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포상금	12,600	1,084	11,515	91.4%
· 하정청백리 포상	9,000	0	9,000	100%
- 대상 = 5,000천원 * 1명	**5,000**	**0**	**5,000**	**100%**
- 본상 = 2,000천원 * 2명	**4,000**	**0**	**4,000**	**100%**
· 청렴활동 포상	3,600	1,084	2,515	69.9%
- 청렴활동 직원참여 포상	**3,600**	**1,084**	**2,515**	**69.9%**

○ 하정청백리상은 조례에 따라[3] 수상 목적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직원 간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포상금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액을 축소하고 있으나, 불용 처리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4년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포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2017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2016포상금	15,000	7,596	7,404	49.4%
2015포상금	15,000	9,601	5,399	36.0%

※ **2018년 포상금 불용사유 :** 2018년도 하정청백리상 공모 결과 2명이 추천되었으나 공적내용이 취지에 부족 또는 부적합하여 위원회 의결로 미선정

※ **2017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대상1명 본상 2명 중 본상 1명만 선정하여 불용액 발생

※ **2016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추천자 심사결과 "대상"수상적격자가 없어 "대상" 없이 "본상"만 2명 선발하여 예산 불용됨

※ **2015년 포삼금 불용 사유 :** 하정청백리 포상 심사결과 '대상' 적격자없어 포상금 일부 미집행('본상' 3명 수여함)

---

3)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정절차)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히, 본 사업의 포상금은 91.4%를 불용처리하면서, 사무관리비는 99.5%, 시책업무추진비는 96.4%를 집행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는 86.8%를 집행하는 등 본 사업의 목적과 수단의 주객이 전도된 전형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음.

○ 부수적으로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사업 중 포상금은 반부패 우수기관을 포상하려는 사업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만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의 ‘포상금’ 중 반부패우수사례 포상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5,200	5,100	100	1.9%
- 최우수 1,000,000원 * 2개 기관	2,000	2,500	△500	△25.0%
· 우수 500,000원 * 4개 기관	2,000	2,000		0.0%
· 장려 300,000원 * 4개 기관	**1,200**	**600**	**600**	**50.0%**

4)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 활동 강화”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감사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안전점검의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을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현액(3천8백만원) 대비 20.3%(770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91,570	81,409	10,161	11.1%
사무관리비	**38,150**	**30,395**	**7,755**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700	16,626	74	0.4%
특정업무경비	36,720	34,388	2,332	6.4%

○ 사무관리비는 3개의 세부항목(안전감사 사례집 제작, 안전현장 점검 피복비,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는 예산현액(1천8백만원) 대비 43.3%(8백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안전,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강화” 중 ‘사무관리비’ 하위사업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8,450	10,462	7,987	43.3%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50,000원*7명*9회	9,450	5,600	3,850	40.7%
- 공정한 하도급문화정착을 위한 자문회의수당 지급 150,000원 * 5명 * 4회	3,000	2,100	900	30.0%
-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 6,000원*1,000부	6,000	2,762	3,237	54.0%

○ 감사위원회는 자문·회의 수당(불용률 30.%)에 대한 불용사유(기술자문 필요 사안 감소)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불용률 40.7%),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54.0%) 등에서도 예산액 대비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하위사업의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의 예산과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하위사업들도 성과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는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 유도 및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8천1백만원) 대비 29.0%(2천4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6,310	62,013	24,297	28.2%
사무관리비	**81,310**	**57,018**	**24,292**	**2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4,995	5	0.1%

○ 불용 처리의 이유는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8회계년도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시신고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사전제공 통보비용 대폭 감소로 잔액 발생

※ **2017회계연도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정보제공동의서을 제출한 수시신고 대상자에 대한 금융통보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예산집행이 저조

〈 **"안전,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강화" 중 '사무관리비' 하위사업 집행현황** 〉

(단위:천원)

	산출기초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7명×11회	11,550	4,343	7,206	62.4%
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 1,750천원×11회	19,250	19,096	154	0.8%
금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	○ 2천원×2천명×4.05명×5통×0.8×0.2	12,960	3,097	9,862	**76.1%**
위원 심사활동비	○ 150천원×7명×11회	11,550	7,100	4,450	38.5%

6) 기강감찰 운영

○ "기강감찰 운영"은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위한 사업이며, 기강감찰팀의 차량 연료비인 '공공운영비'는 불용률이 29.7%(집행잔액 338만원) 수준임.

〈 **"기강감찰 운영"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강감찰 운영	66,147	58,436	7,711	11.7%
사무관리비	42,771	38,444	4,327	10.1%
공공운영비	11,376	7,992	3,384	29.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	0.0%

○ “기강감찰 운영”의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는 최근 5년 평균 불용률이 45.2%이며, 유가하락과 감찰환경의 변화(원거리→근거리)를 불용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률 현황 〉

(단위:천원)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13,446	14,523	14,523	14,523	12,284	11,376
집행액	7,363	8,646	7,472	5,121	7,585	7,992
불용액	6,083	5,877	7,051	9,402	4,699	3,384
불용률	45.2%	40.5%	48.6%	64.7%	38.3%	29.7%

〈 최근 5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사유 〉

2018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인 유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찰강화)

2017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 **유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 **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찰강화)

2016년 불용사유 : 1ℓ당 1,985원이었던 단가가 1,309원으로 **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

2015년 불용사유 : **유가 급락**(14년 단가 1,666원/L 대비 203원/L (12.2%)하락) 및 **감찰환경 변화(원거리->근거리)에 따른 집행잔액**

2014년 불용사유 : 동 예산은 차량연료비로서 예산편성당시 리터당 2,017원(휘발유)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유가하락** 등의 사유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음

○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 불용의 원인이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전례답습적 예산 과다편성, 부적정한 예산운용 뿐만 아니라 기강감찰 활동의 위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찰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체계 변경 등 기강감찰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2018년 기강감찰 활동 실적 〉

(단위:건)

구분	합 계		본관 및 별관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소계	1,681	45	242	2	814	35	244	2	381	6
2018	497	12	40	-	217	8	52	-	188	4
2017	653	15	66	1	353	12	113	-	121	2
2016	531	18	136	1	244	15	79	2	72	-

나.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 필요

○ 감사위원회의 예산집행 현황 중 보상금 및 구조금(659.8% 초과지출), 기본사무용 종이류(154.8%~393.3% 초과지출), 소규모 수선비(1585.2% 초과지출) 등은 예산편성액 대비 과다한 규모로 지출하고 있는바,

본 항목들이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타 업무를 위해 초과지출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실소요 수량 및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사업추진의 필수경비 및 필수예산의 적정규모를 재산출하여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과다지출 사업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사무관리비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운영	3,200	20,023	△16,823	625.7%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타보상금	보상금및 구조금	20,000	131,954	△11,954	659.8%
감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소규모수선비	230	3,646	△3,416	1585.2%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870	3,426	△2,556	393.8%
안전감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700	1,372	△672	196.0%
조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927	1,435	△508	154.8%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정 찬 일